

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

주소:우 12461,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-181 3층/전화:02-3271-0488/fax:02-3271-0488 /담당자: 김수만

문서번호 : 세가업무 전도 19-3	선 결			지 시	
시행일자 : 천일국6년 천력 12월 14일 (양력 2019년 1월 19일)	접 수	일자 시간		결 제	
경 유 :		번호		·	
수 신 : 지구장, 교구장, 교회장	처 리 과			공 람	
참 조 : 지구총괄국장 및 각부장 교구사무장	담 당 자				

제 목 : 신종족메시아 세계기준 사명완수 및 완료 행정 종합안내

1.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2.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및 완료를 위한 행정 종합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,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개요: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및 완료 7조건 행정 안내

- 1) 4조건(교육, 축복헌금, 성주식, 축도): 축복확정이 된 축복가정의 경우 자동 충족
- 2) 3조건(탕감봉, 40일성별, 3일행사): 축복확정이 된 1996년 이전 축복가정은 자동 충족

가) 미혼1세, 미혼2세 축복가정: 2018년 이전 축복가정은 자동 충족

나) 기성 축복가정: ‘신종메 사명완수 처리’ 또는 ‘기성/특별 축복조회’ 메뉴에서 3조건 행정 진행

※ 2009년 이전 기성 축복가정의 경우 ‘신종메 사명완수 처리’ 메뉴에서만 3조건 행정이 진행 가능함.

다) 독신 축복자(영육계축복가정): ‘미혼(독신)축복후보자조회’ 메뉴에서 3조건 행정 진행

※ 2018년도 이전 영육계축복 가정출발수련을 마친 영육계축복가정의 경우 천주청평수련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일괄 등록 및 승인할 예정임.

3) 참부모님 표창자 38가정 관련 안내

가) 2018년 12월 19일에 발송된 ‘세가세본 2018-261’에 따라 참부모님 표창장을 수상한 38가정 또한 천보원 신종족메시아관 등재를 위한 인증조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종적으로는 430대 조상축복식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, 횡적으로는 종족원 430가정 중 43가정 이상이 7가지 조건을 완료해야 함.

나) 2018년 12월 14일 발송된 ‘세가본 제538호(전도-422)’에서 참부모님 표창자 38가정의 ‘43가정 이상의 7가지 조건 면제’에 대한 내용은 행정적 완료인증에 관한 것으로 천보원 신종족메시아관 등재와는 별개의 내용임.

나. 교회관리시스템상 축복확정(4조건 충족)을 위한 행정방법

1) 새식구

가) 식구등록: 하나로행정지원시스템에서 새식구 등록 및 입회 진행

나) 축복신청: 교관 ‘축복관리>미혼축복후보자관리 or 기성/특별축복관리’ 메뉴에서 축복 프로세스 진행

다) 축복확정:

(1) 기성/독신 축복: 교구승인 후 축복확정일 자동 입력

(2) 미혼축복: 협회본부(가정국) 승인 후 축복확정일 일괄 입력

2) 교회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축복가정

가) 식구등록: 교관 ‘식구관리>새식구등록’ 메뉴에서 휴면식구로 등록

※ 기성가정의 경우 배우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, 미등록시 추가 3조건 진행이 불가함.

나) 믿음의부모 연결: 교관 ‘식구관리>신종족메시아관리>믿음의 부모현황’ 메뉴에서 ‘믿음의부모 등록/정정’ 프로세스 진행

다) 축복확정: 교관 ‘식구관리>신종족메시아관리>믿음의 부모현황’ 메뉴에서 식구 조회 후 ‘축복가정 현장요청’ 프로세스 진행

※ ‘축복가정 현장요청’ 등록 시 축복증빙서류(축복받은 사진, 또는 축복 참여 사실 확인서- 첨부자료)를 첨부해야 함(개발 예정이므로 개발 전까지는 신한국가정연합 가정국 이메일로 축복증빙서류를 발송).

※ 160가정의 경우 ‘4천만기성-160가정’으로 축복명을 요청

※ 기성/독신 가정은 축복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축복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축복확정일을 받지 못하면 추가행정을 진행할 수 없음.

다. 3조건(탕감봉, 40일성별, 3일행사) 충족을 위한 행정방법

1) 교관 축복행정프로세스에 등록된 축복가정 3조건 행정방법(2010년 이후)

가) 메뉴위치: 교관 '축복관리>기성/특별 축복조회 or 미혼(독신)축복후보자조회' 메뉴에서 식구를 조회한 후 식구명을 클릭하고 '신종메 서류' 버튼을 클릭

나) 대 상: 축복행정프로세스에 등록된 기성 축복가정 및 독신 축복자

다) 행정절차

(1) 기성 축복가정

a. 교회: 축복확정일 확인 후 순차적으로 탕감봉 실행일자, 40일 정성(성별) 기간, 3일행사 기간을 입력 후 '확인' 버튼 클릭

b. 교구: 교회에서 상신한 내용 검토 후 '승인' 버튼 클릭

(2) 독신 축복자(영육계축복가정)

a. 교회: 축복확정일 확인 후 순차적으로 '영육계축복 가정출발수련 확인증' 첨부하고, 3일행사 기간을 입력 후 '확인' 버튼 클릭

b. 교구: 교회에서 상신한 내용 검토 후 '승인' 버튼 클릭

라) 유의사항

(1) 교구 승인 후 '신종족메시아 명단관리'에 반영되는데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.

(2) 식구조회는 현재 소속교회가 아닌 축복신청서 상신교회에서만 가능함.

2) 기성 축복가정 3조건 행정방법(행정편의를 위한 추가개발 건)

가) 메뉴위치: 교관 '식구관리>신종족메시아관리>신종메 사명완수 처리' 메뉴

나) 대 상: 기성 축복가정

다) 행정절차

(1) 교회(상신)

a. 식구 조회 후 축복확정일 및 축복구분을 확인하고 '등록' 버튼 클릭

b. 순차적으로 탕감봉 실행일자, 40일 정성(성별) 기간, 3일행사 기간을 입력 후 '등록' 버튼 클릭

(2) 교구(승인)

- a. 진행상태에서 ‘등록완료(승인대기 건)’로 체크 후 조회
- b. 교회에서 상신한 내용 검토 후 ‘승인’ 버튼 클릭

라) 유의사항

- (1) 교구 승인 후 ‘신종족메시아 명단관리’에 반영되는데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.
- (2) 식구조회는 현재 소속교회에서만 가능함.
- (3) 교회관리시스템상 축복행정프로세스에 등록/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3조건 축복행정이 가능함(단, 기성에 한하여 축복확정일이 반드시 있어야 함).

※ 축복행정프로세스 미등록자의 축복확정의 경우 ‘나. 2) 다)’항 참조

라. 문 의

- 1) 신종메 종합안내 : 전도교육국 02-3271-0488
- 2) 신종메 축복 및 행정 완료 승인 안내 : 가정국 02-3271-0523

#첨부.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및 완료 행정 매뉴얼(종합)

“끝”

전도교육국장 이 기 식

